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06
----------	-------

발의연월일 : 2022. 1. 21.

발의자 : 배현진 · 권명호 · 김기현

김미애 · 김승수 · 김태홍

백종현 · 이철규 · 조명희

최형두 · 허은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여에 걸쳐 만4세~5세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

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 제8호 및 제20조제4호 · 제5호 신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6조(결격사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u>  <u>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u>  <u>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u>  <u>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u>  <u>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u>  <u>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u>  <u>따른 성폭력범죄</u>  <u>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2</u>  <u>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u>  <u>상 성범죄</u></p> <p><u>8.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u>  <u>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u>  <u>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u>  <u>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u>  <u>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u></p>
<p><u>&lt;신 설&gt;</u></p>	

	<p><u>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u> <u>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u> <u>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u> <u>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u> <u>다)</u></p>
<u>7. ~ 9. (생 략)</u>	<p><u>9. ~ 11. (현행 제7호부터 제9</u> <u>호까지와 같음)</u></p>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 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제20조(결격사유) ----- ----- -----.
<u>1. ~ 3. (생 략)</u>	<p><u>1. ~ 3. (현행과 같음)</u></p>
<u>&lt;신 설&gt;</u>	<p><u>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u> <u>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u> <u>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u> <u>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u> <u>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u> <u>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u> <u>따른 성폭력범죄</u></p>
<u>&lt;신 설&gt;</u>	<p><u>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2</u> <u>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u> <u>상 성범죄</u></p>
	<p><u>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u></p>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